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5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0,870,354	13,226,111
일반회계	414,149,454	12,424,484
특별회계	26,720,900	801,627
기타특별회계	26,720,900	801,627
상수도	14,720,613	441,618
의료보호사업	2,413,116	72,393
기초생활보장기금	860,897	25,827
주민소득지원기금	1,004,247	30,127
묘포장	30,229	907
주택사업	161,456	4,844
기반조성사업	44,870	1,346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304,481	9,134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	7,059,290	211,779
공유임야관리	121,701	3,65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09,64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